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에 민간위원 포함〉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34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0.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되어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군무원 징계위원회를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군무원 징계위원회) ① (생략)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신설>	제39조의2(군무원 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2.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규정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부 군인 또는 군무원 등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될 수 있음.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수를 군인 징계위원회 위원수인 3명과 달리 5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군인 대비 군무원의 징계 건수가 적고¹⁾, 입법 당시 군무원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 최상급부대에서 소수만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산간 오지에 있는 군인보다는 징계위원 5인을 구성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징계위원 위원수 5명은 현행과 같이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민간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군무원 징계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공정성과 풍부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군무원 징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의 자격을 설정하기 쉽지 않고, 도서·산간·격오지에 있는 부대일수록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어서 특정 인원만이 징계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개정안 제3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라고 규정하는 경우,

1) 2023년 기준 연간 징계건수는 군무원 201건, 군인 43,439건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대한민국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²⁾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음³⁾.

□ 국방부는 민간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는 데 있어 ‘징계권’은 원활한 부대 지휘를 위하여 지휘관에게 부여된 지휘권⁴⁾의 일종인데 외부 민간위원의 의결권 행사로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 2)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3)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재 1991. 7. 8. 91헌가4)
- 4) 「군무원인사법」 제38조에 따른 징계권의 범위

징계권자	징계심의대상자	징계 범위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1급 군무원을 포함한 모든 군무원	중·경징계
사단장(장성급 여단장), 전단사령관·비행단장 및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기관의 장	2급 이하 군무원	중·경징계
연대장, 합정장·전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기관의 장	2급 이하에서 6급 이상 군무원	경징계
	7급 이하 군무원	중·경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기관의 장	7급 이하 군무원	경징계